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국제적 책임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역사상 처음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의 발사로부터 51년째가 되는 2008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2020년 달탐사 궤도위성의 발사의 계획의 기반조성과 2010년 무궁화위성 6호의 발사를 위한 활성화의 시기라 할 것이다¹⁾. 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활동을 활발화시켜 가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 종래 우주활동을 행하고 있었던 각국에 더해, 중국, 인도 등이 달탐사를 계획·실시하고 있다²⁾. 이러한 우주활동의 활성화는 새로운 자원의 획득이라는 장점과 함께, 우주물체에 의한 사고 발생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물체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국제책임을 정한 국제법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다만 이에 대한 중심이 되는 것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다루는 원칙에 관한 조약」(1967년 이하 「우주조약」) 제6조 및 제7조와 그 자세한 항목이 조약된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에 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조약」(1983년 이하 「우주손해책임조약」)이다.

II. 우주관계 제조약(諸條約) 형성

1957년 10월에 당시의 소련은 역사상 처음으로

1)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21410185176765&outlink=1>(2008.4.2).

2) 松浦晋也, “新たなプレイヤーが続々参加取り残される日本の宇宙探査”, 週刊ダイヤモンド 96巻1号, 2007.12.29, 2008.1.5 新年合併号, 114面; 木原啓二, “月面探査”ラッシュで宇宙開発競争が激, 経済界 41巻20号, 2006.10.17, 66-67面.

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1호」의 발사의 성공 및 1961년 4월에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도 실현하게 되었다. 또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우주를 향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류에 의한 급속한 우주개발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UN은 「스푸트니크(Sputnik)1호」발사로부터 1개월 후에, 우주를 「다만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 1148을 채택했다³⁾. 또한 1958년 12월에는 우주공간의 연구에 대한 원조, 정보교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실제적 방법 및 법률문제의 검토를 행하고, 이것들의 활동보고를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가 설치되었다⁴⁾.

1966년에는 유엔총회결의인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다루는 법원칙에 관한 선언」⁵⁾ (이하 「원칙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한 우주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우주활동에 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헌장이라고도 불리어 진다⁶⁾.

그 후, 우주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세한 항목조약으로서 ① 「우주 비행사의 구조

와 송환 및 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1983년. 이하 「구조반환협정」) ② 「우주 손해책임조약」·「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1983년. 이하 「우주물체등록조약」) ③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다루는 협정」(이하 「월 협정」) 등의 조약·협정 등이 순차적으로 채택되었다.

Ⅲ. 우주조약과 우주손해책임조약

1. 우주조약

우주조약에 있어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제6조

제6조는 조약 당사국이 자국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단체의 어느 것에 의해 행하여 질지를 막론하고, 국제적 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을 가지고, 자국의 활동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책임을 가지는 것과, 또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에는 조약 관계당사국의 허가 및 계속적 감독⁷⁾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3) UN Doc. A/RES/1148(XII).

4) UN Doc. A/RES/1348 (XIII). COPUOS에는 과학기술소위원회 및 법률소위원회라고 하는 2개의 하부조직이었다. 전자는 과학기술면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후자는 우주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다.

5) UN Doc. A/RES/1962 (XVIII).

6) UN Doc. A/4141, A2.

이 조문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 국제법에서는, 개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가령 개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타국 또는 타국민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여도, 국가가 해당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한 국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조약은 개인이 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운다는 점은 일반국제법의 국가책임원칙과 다르다.

「자국의 우주활동」은, 자국영역 내에서 자국 또는 자국 국민이 행하는 활동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 국가의 허가 및 계속적 감독이 법적으로 가능한 활동, 즉 영역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그것들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자국 또는 자국 국민의 활동은 「자국의 우주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제7조

제7조는 조약당사국이, ① 우주공간에 물체를 발사한 경우, ② 우주공간에 물체를 발사시킬 경우, ③ 그 영역에서 물체가 발사될 경우, ④ 그 시설에서 물체가 발사될 경우에, 다른 당사국 또

는 그 자연인 혹은 법인에 생긴 손해⁸⁾에 대해서,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internationally liable)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자국의 우주활동에 더해, 타국의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⁹⁾.

2. 우주손해책임조약

1964년, COPUOS법률소위원회는, 우주 손해 책임조약의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는, 「피해자본위(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 손해피해자에의 충분하고 형평성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제면과 절차면의 쌍방향적으로 상세한 규정이 작성되었다¹⁰⁾.

(1) 책임의 주체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발사국」이다. 「발사국」이란, ① 발사를 행하는 나라, ② 발사를 행하게 하는 나라, ③ 그 영역에서 물체가 발사되어 지는 나라, 또는 ④ 그 시설에서 물체가 발사되는 나라(제1조)로, 우주조약 제7조와 같은 규정이 두어져 있다. 한편, 「발사」에는, 성공하지 않은 발사도

7)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이 아닌 각국의 국내법령에 맡겨져 있다.

8) 이때의 손해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로서, 물체의 발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한정된다. 그 밖의 우주활동에 의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6조가 적용된다.

9) 우주조약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Bin Cheng,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Manual on Space Law Volume I . N.Y.: Oceana Publications, 1979, p.238).

10) 中村 恵, "宇宙法の体系", 『陸・空・宇宙』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2卷, 三省堂, 2001, 201面.

포함된다(제1조).

우주물체의 발사는, 복수의 국가에 의해 공동으로 실시되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경우 야기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양국가는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제5조 1항). 또, 우주물체가 그 영역 또는 시설에서 발사되는 나라는, 공동발사의 참가국으로 간주된다(제5조 3항).

(2) 손해의 범위

「손해」란, 사람의 사망 혹은 신체의 상해 기타 건강의 상해¹¹⁾ 또는, 국가, 자연인, 법인 또는 국제적인 정부기관의 재산의 멸실 혹은 손상을 말한다(제1조).

「손해」에는, 사람의 사망, 신체의 장애와 같은 유형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된다로 여겨진다.

우주물체의 발사, 비행, 재돌입 등의 활동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직접손해」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간접손해」 및 사고의 발생으로 장시간의 경과 후에 현재화하는 「후발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다. 이에 대해 현재는 「손해」의 정의에 「간접손해」 및 「후발적 손해」의 문언은 삽입되지 않았으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명료하고 적절한 동시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²⁾.

우주물체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것이, 발사국의 국민 또는 우주물체의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발사국과의 협약에 의한 발사예정지역이나 회수예정지역에 인접하는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었을 경우에는 이 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제7조).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표에 있어서 야기할 손해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준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제2조). 또한, 손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그 우주물체가 사람 혹은 재산에 대하여, 지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야기되었을 경우, 발사국은 과실 책임을 진다(제3조).

우주 손해책임조약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배상금액은, 해당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것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보상이 행하여지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제12조).

IV. 우주물체손해책임제도의 특징

우주조약은 국가에의 책임집중이라고 하는 종래의 국제법과는 다른 국가책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주 손해책임제조약에서는, 「피해

11) S. Gorove, *Studies in Space Law: its Challenges and Prospects*, Leyden: A. W. Sijthoff, 1977, p.125.

12) UN Doc. A/AC.105/C.2/L.61, pp.1-2.

자본위」의 슬로건 아래,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의 구제에 유리한 실질적·절차적 규정이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 국제법상 국가는 완전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우주활동의 경우에는,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즉,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자국의 활동의 경우에는, 조약당사국이 「그것이 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 질지 비정부단체에 의해 행하여 질지를 막론하고」 책임을 가지고(우주조약 제6조),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주는 손해에 대해서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우주조약 제7조). 이를 소위 「국가에의 책임집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둘째, 우주손해책임조약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과의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① 지표 이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물체 내의 사람·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제3조), 및 ② 그러한 손해가 원인이 되어, 지표 이외의 장소에서 제3국 또는 그 자연인·법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발사국은 과실책임을 진다(제4조 제1항). 그리고 발사국에 무과실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① 지표에 있어서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제2조) 및 ② 기타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그 승무원·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주고, 그 결과, 지표의 제3국 또는 그 자연인·법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이다(제4조 제1항).

셋째,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제계속의 원칙 및 국내적 구제의 원칙의 완화와 같은 특징이 보여진다.

V. 맺음말

우주 손해책임조약에 남겨진 문제로서 자주 지적되는 점으로,

첫째, 우주 손해책임조약은 달 기타의 천체표면 또는 그 대기중으로 생긴 손해의 문제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조약보다도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천체상의 기지와 같은 고정시설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우주 손해책임조약이 적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우주 손해책임조약 제1조는, 『우주물체』에는, 우주물체의 구성부분 및 우주물체의 발사 및 그 부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우주물체에 대한 정의로서는 부정확한 면이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천체상의 기지와 같은 고정시설은 「우주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셋째, 최대의 문제로서 지적되는 점이지만, 우주손해책임조약은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실제규칙 및 절차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교교섭에 의한 해결이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동(同)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적인 동시에 구속력

이 있는 결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19조). 또한,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동시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배상은 그 책임을 소유하는 타인 상대국의 성의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주 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과 청구국의 국가간 관계를 규율할 뿐으로, 실제의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관계는 직접 규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의 책임을 국가에 집중시킨 것에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피해자개인의 이익을 모두 국가의 국제법상의 법익에 동일화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남기면서도 여전히, 우주 손해책임조약은, 우주조약 제6조 및 제7조를 구체화한 점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제청구절차에 있어서의 국내적 구제 원칙의 완화 등은 유익한 신제도이며, 개인의 보호에 관한 것 이외의 조약에 의해 모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짜여진 조약이더라도, 가맹국의 성실한 준수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주물체에 의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본위」의 정신에 근거하여,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